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및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음반 등의 부당한 구입과 관련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건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주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을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을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등(같은 항 제1호, 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5조제3항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법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 또는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한다.

제16조를 제18조의5로 한다.

제18조의4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도급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31조의4(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① 수급인이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그 건설공사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편제3장의 제목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26조의10제1항 및 별표 6의3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의 공개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1항 중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9호의6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9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8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 신청서”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을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4호) 중 “영 제26조의7”을 “법 제30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의7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신청서”로, “고용노동부장관”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별지 제9호의8서식의 등록증”을 “별지 제9호의11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으로 한다.

제39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영 제26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직무교육위탁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직무교육위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에서”를 “다른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제73조의3제1항제1호 중 “크레인, 리프트”를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인력기준 표 아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사업장 수 600개소를 초과하거나 근로자 수 4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수 30개소 또는 근로자 수 2,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 경우 누적 사업장 수가 150개소 또는 누적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해야 하는 사람은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으로 한다.

별표 6의5 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와 수급인에게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별표 8의2 제1호의 제목 중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p> <p>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p> <p>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p>	<p>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p> <p>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p> <p>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p> <p>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p> <p>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p> <p>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p> <p>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p> <p>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p> <p>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p> <p>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p> <p>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p> <p>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p> <p>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p> <p>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p> <p>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p> <p>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p> <p>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p> <p>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p> <p>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p>	<p>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p> <p>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p> <p>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p> <p>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p> <p>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p> <p>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p> <p>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p> <p>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p> <p>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p>	<p>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p>	<p>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p>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비산방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표 9의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	□□	□□	-	□	-	□□□□
㉠ 합격연도		㉡ 검사기관	㉢ 지역(시·도)		㉣ 안전검사대상품		㉤ 일련번호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지역명	번호
서울특별시	02	광주광역시	62	강원도	33	경상남도	55
부산광역시	51	대전광역시	42	충청북도	43	전라북도	63
대구광역시	53	울산광역시	52	충청남도	41	전라남도	61
인천광역시	32	세종시	44	경상북도	54	제주도	64
		경기도	31				

㉔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번호	종류	표시부호
1	프레스	A
2	전단기	B
3	크레인	C
4	리프트	D
5	압력용기	E
6	곤돌라	F
7	국소배기장치	G
8	원심기	H
9	화학설비	I
10	건조설비	J
11	롤러기	K
12	사출성형기	L
13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M
14	컨베이어	N
15	산업용 로봇	O

㉕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별표 9의5 제1호가목1)의 안전검사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검사대상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압력용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종합안전검사

별표 9의5 제2호 번호 1의 시설 및 장비기준란 중 “크레인·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곤돌라”를 “크레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곤돌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번호 2의 항목란 중 “프레스·전단기·사출성형기·롤러기·원심기”를 “프레스, 전단기, 사출성형기, 롤러기,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으로 한다.

별표 10의3 제1호가목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2)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별표 10의4 제1호가목1)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중건의 라목) 중 “(법 제32조의3제1항 관련)”을 “(법 제32조의3 관련)”으로 한다.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나)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최근 1년간 제1호바목에 따른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회 이상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법 제32조의3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8)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Ⅲ. ⑱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Ⅲ. 재해발생 개요 및 원인	⑱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⑲재해발생원인	

⑱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9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9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의10서식(중전의 별지 제9호의7서식) 및 별지 제9호의11서식(중전의 별지 제9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의사항

1. 현장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2. 해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표 9의5의 개정규정(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5 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2호다목7)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육을 면제하되, 2017년 10월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기관	사업장명		사업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근로자 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명
교육 대상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지방고용노동관서 선임신고일(관계 전문기관의 종사자의 경우는 채용일)		
	국가기술 자격 종목 및 등급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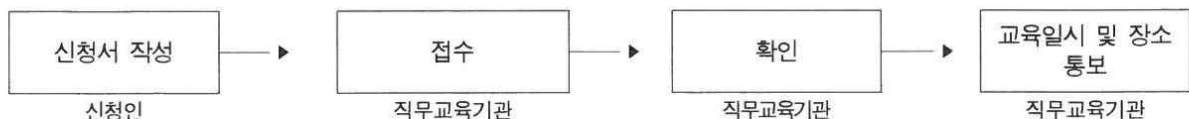
<p>[] 관리책임자</p> <p>[] 안전관리자</p> <p>[] 보건관리자</p> <p>[] 안전보건관리담당자</p> <p>[]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p> <p>[]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p> <p>[]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p> <p>[] 석면조사기관 종사자</p>	<p>[] 신규</p> <p>[] 보수</p> <p>[] 전문</p> <p>[] 통신</p>	<p>교육의 수강을 신청합니다.</p>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

건설현장 개요	건설업체명	공사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공사기간
	발주자	

공사기간 연장 요청사항	연장 일수	
	변경 공사기간	

공사기간 연장사유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 사실 증빙 서류 2. 공사기간 연장 요청 기간 산정 근거 및 공사 지연에 따른 공정 관리 변경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6서식]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변경등록 신청하는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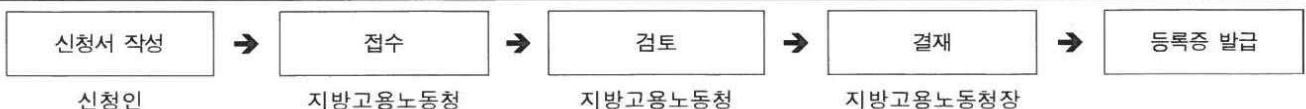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7서식]

제 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사업장명
(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10서식]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교육 종류 (최초 등록하는 경우에 작성)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일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분야 <input type="checkbox"/>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산업보건일반 <input type="checkbox"/> 산업위생 <input type="checkbox"/> 산업간호 <input type="checkbox"/> 직업환경의학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변경사항 (등록사항 변경 신청 시 작성)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하는 경우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5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시설·장비명세서	수수료 없음
	변경등록신청하는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영 별표 6의5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지사항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제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11서식]

제 호

직무교육위탁기관 등록증

사업장명(상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직무교육 종류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일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분야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분야 <input type="checkbox"/>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산업보건일반 <input type="checkbox"/> 산업위생 <input type="checkbox"/> 산업간호 <input type="checkbox"/> 직업환경의학 <input type="checkbox"/>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input type="checkbox"/>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장

직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2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발주자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원						기술지도 횟수	총()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 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 일자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6호다목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위탁 사업장명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명칭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나 태풍·홍수·지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의 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홍수·지진·화재 등의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2)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 2)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지도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안 제73조제11호 신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